

# 한국의 무기 수출 통제 체계 개선 방향

## -독립적 규제위원회 도입의 필요성과 방향-

### Improving South Korea's Arms Export Control System

####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Establishing an Independent Regulatory Commission-

조 장 현\*  
Jo, Jang Hyun

#### 목 차

- |                                     |   |
|-------------------------------------|---|
| I. 서론                               | IV. 한국 무기수출통제 체계의 개선 방향:<br>독립규제위원회 설립의 필요성과 방향 |
| II. 한국의 무기수출통제 체계                   | V. 결론   |
| III. 주요국의 무기수출 통제 체계:<br>미국과 독일의 사례 |   |

본 연구는 한국의 무기 수출 통제 체계의 한계를 분석하고,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비교하여 독립적인 무기수출통제위원회 설립을 통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한국의 현행 체계는 방위사업청 중심으로 운영되며 일정한 행정적 효율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의회의 감독 부족, 투명성 미흡, 다부처 협력 한계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미국은 의회가 강력한 감독 권한을 행사하며, 무기수출통제법(AECA)과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을 통해 민주적 통제와 정책적 일관성을 보장한다. 독일은 연방안보위원회(Bundessicherheitsrat)를 중심으로 다부처 협력 체계를 유지하지만, 비공개 운영으로 인한 투명성 부족이 한계로 지적된다.

본 연구는 한국이 미국의 투명한 감독 체계와 독일의 다부처 협력 구조를 결합한 독립적 통제 기구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한다. 해당 기구는 방위사업청,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등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무기 수출 승인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 바세나르 체제(WA),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MTCR), 무기거래조약(ATT) 등 국제 규범

<https://doi.org/10.35148/ilsilr.2025..60.293>

투고일: 2025. 3. 22. / 심사완료일: 2025. 4. 14. / 게재확정일: 2025. 4. 15.

\* 변호사(District of Columbia, U.S.A.), 한동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수료

Attorney at Law(District of Columbia, U.S.A.), Ph.D Candidate, School of Law, Handong Global University

을 준수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단계 심사 및 의회 보고 체계를 도입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 무기 수출이 국가 안보와 국제적 책임을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독립적인 무기수출통제위원회의 설립은 한국의 국제적 신뢰도와 방위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책임 있는 무기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주제어]** 한국의 무기수출통제 체계, 대외무역법, 방위사업법, 미국 무기수출통제법, 독일 연방 안보위원회

## I. 서론

무기 수출 통제는 현대 국제 사회에서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무기의 수출은 단순히 경제적 관점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활동에 그치지 않고, 국제적인 외교 관계와 국가 안보 정책의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무기 수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국가의 주권을 보호하고, 국제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한국은 20세기 후반부터 방위산업의 발전과 함께 무기 수출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왔다. 특히, 국내 방위산업의 기술력이 발전하고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향상되면서 무기 수출은 국가 경제와 안보 정책의 주요 축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무기 수출 통제 체계는 방위산업의 성장과 글로벌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 현행 방위사업청 중심의 통제 시스템은 행정적 효율성을 제공하지만, 국제 규범 준수, 투명성, 그리고 다자간 협력 측면에서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한국의 무기 수출 통제 체계가 국제 사회의 신뢰를 확보하고, 방위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며, 국가 안보를 보장하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수출 승인 과정에서 국제 규범 준수 여부와 인권 문제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며,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무기 수출 통제 체계를 분석하고, 주요 선진국인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통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미국과 독일은 각각 의회와 행정부 중심의 무기 수출 통제 모델을 채택하여 독특한 강점과 약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 두 국가의 사례는 한국이 독립적이고 투명한 통제 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통합적이고 독립적인 기구의 설립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한국의 무기 수출 통제 체계가 국제적 신뢰와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러한 논의는 한국이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서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무기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II. 한국의 무기수출통제 체계

한국의 무기 수출 통제는 「대외무역법」을 중심으로 「방위사업법」,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등 다양한 법률과 규정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법령들은 국제 규범의 변화와 국내 방위산업 정책의 발전에 따라 점진적으로 정비되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무기 수출 통제 체계가 구축되어 왔다.

〈표 II-1〉 한국 무기수출통제 제도의 법령별 연혁과 주요 특징

입법/제도	시기	특징
군정법령 제39호 「대외무역규칙」	1946년	대외무역 전면 통제, 군정장관의 허가 필요
「무역법」	1957년	대외무역의 관리와 통제를 공식화
「무역거래법」	1967년	무역 관련 법률 통합, 효율성 제고
핵확산방지조약(NPT) 가입	1975년	비핵화 및 핵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의무 수용
전략물자 수출허가제 도입	1989년	무기 및 민간 겸용 물품 수출 규제 강화
「대외무역법」 개정	1993년	전략물자 통제 강화, 국제 규범 준수 기반 마련
WMD관련 기술 수출규제 도입	2003년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와 관련 기술 수출 규제
「대외무역법」 제19조 캐치올 통제 명문화	2007년	전략물자뿐 아니라 비전략물자에 대한 통제 강화
전략물자 수출입 절차 세분화	2013년	수출 대상국 및 사용 목적에 대한 평가 강화
수출 허가 요건 강화 및 방위산업 진흥 기반 마련	2016년	무기 수출 증가와 방위산업 육성 반영

한국의 「대외무역법」은 국제무역 질서를 규율하고 국가 안보 및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후 전략물자 및 무기 수출 통제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sup>1)</sup> 초기에는 무역 관리와 진흥이 주된 목적이었으나, 국제 안보 환경과 규범 변화에

1) 김현지/김대원/최승환, “한국의 통합 수출통제법령 제정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통상학회 제12권

따라 전략물자 통제와 방위산업 지원을 아우르는 법적 체계로 확장되었다.

한국의 대외무역 관련 법령은 정부 수립 이전인 1946년 군정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같은 해 1월 3일 제정된 군정법령 제39호 「대외무역규칙」은 남한과 다른 지역 간의 화물 및 재산 이동, 대외거래를 엄격히 통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규정에 따라 모든 대외거래는 군정장관 또는 대행기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했으며, 허가 없는 거래는 전면 금지되었다.<sup>2)</sup>

그해 7월 4일 제정된 군정법령 제93호 「외국과의 교역통제」는 대외무역이 국가 안보와 경제적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 이를 군정의 통제 아래 두고자 한 조치였다.<sup>3)</sup> 이러한 군정기 법령들은 대외무역을 정부의 관리와 통제 하에 두려는 초기의 법적 시도로 평가되며, 1957년 「무역법」은 군정기 법령의 연장선상에서 대외무역의 관리와 통제에 관한 법적 체계를 공식화하였다.<sup>4)</sup>

1960년대 수출 주도형 경제정책을 바탕으로 무역 관련 법률 체계가 점차 정비되고 발전하였다. 1961년 「수출조합법」과 「수출장려보조금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되어 수출업체 간 협력을 촉진하고 수출 증진을 위한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어 1962년에는 「수출진흥법」과 「수출검사법」이 제정되어 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출품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여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형성되었다. 1967년 1월 16일에는 「무역법」, 「수출진흥법」, 「수출장려보조금 교부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통폐합하여 법률 제1878호로 「무역거래법」을 제정함으로써 무역 관련 법률을 통합하고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이후에도 1968년 「수출보험법」이 제정되어 수출 거래의 위험 분산을 위한 보험 제도가 도입되었고, 1970년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을 통해 수출 중심 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였으며, 1978년 「산업설비수출촉진법」이 제정되어 산업 설비의 해외 수출을 촉진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법률들은 무역 촉진과 수출 증대를 위한 법적 체계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며,

제2호, 국제통상연구, 2007, 162쪽.

- 2) 국사편찬위원회, “법령 제39호, ‘대외무역규칙’가 공포”, 1946. 1. 3, <[https://db.history.go.kr/id/dh\\_001\\_1946\\_01\\_03\\_0080](https://db.history.go.kr/id/dh_001_1946_01_03_0080)>, 검색일: 2024. 12. 16.
- 3) 국사편찬위원회, “제헌헌법-경제개혁”, <[https://db.history.go.kr/item/cons/levelOnlyBiblio.do?levelId=cons\\_001\\_0050\\_0060\\_0020\\_0010](https://db.history.go.kr/item/cons/levelOnlyBiblio.do?levelId=cons_001_0050_0060_0020_0010)>, 검색일: 2024. 12. 16.
- 4) 제헌 헌법 제87조는 “대외무역은 국가의 통제 하에 둔다”고 규정하여 대외무역에 대한 국가의 관리 권한을 헌법적으로 명문화하였다. 이후 1952년 3월 상공부 고시 제88호 ‘대외무역 수속에 관한 건’은 대외무역의 수출입 관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대외무역 통제 권한에 대한 실질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80년대 들어 냉전의 지속<sup>5)</sup>과 중동, 아시아 등에서의 지역 분쟁<sup>6)</sup> 등으로 인해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가 국제 안보의 주요 의제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 사회는 핵, 생화학 무기 및 관련 기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다자간 협력체와 규범 체제를 강화하였다.<sup>7)</sup> 한국은 1975년 핵확산방지조약(NPT)에 가입하여 비핵화와 핵확산 방지의 국제적 의무를 수용하였으며, 1987년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 가입하여 생물학 무기의 개발과 보유를 금지하였다. 또한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서명하고 이후 이를 비준하였으며,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MTCR)와 같은 다자간 수출 통제 체제에도 동참하였다. 한국은 이와 같은 국제조약 및 협력체를 통해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기술 및 물자의 확산 방지에 참여하였다.

1989년 「대외무역법시행령」을 통해 전략물자 수출허가제도가 도입되었으며,<sup>8)</sup> 무기 및 민군 겸용 물품의 수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당시에는 구체적인 전략물자 리스트나 통제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지만,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한국의 무기 수출 통제를 위한 법적 기반이 점진적으로 형성되었다. 1993년 「대외무역법」의 개정은 전략물자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이후 국제 규범을 준수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sup>9)</sup> 이는 한국이 국제 수출 통제 체제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국내 법과 국제 규범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략물자의 범위와 통제 절차를 명시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가 제정되어 실행 단계에서의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게 되었다.

2000년대 「대외무역법」 개정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와 국제 규범과의

5) Gerold Yonas, "The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Daedalus Vol. 114 No. 2*, The MIT Press, 1985, pp. 73-74.

6) 이란-이라크 전쟁(1980-1988)에서는 화학무기가 실제로 사용되어 대량살상무기의 실질적 위협이 국제 사회에 부각되었으며, 이란과 이라크 양측이 화학무기 사용을 부인하거나 상대방을 비난하였다. 아프가니스탄 분쟁(1979-1989)에서는 소련의 개입과 무장 세력 간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 기술의 확산 가능성이 국제적 우려로 부상하였고, 분쟁 지역 내 비대칭적 군비 경쟁이 이러한 확산 가능성을 더욱 심화시켰다.

7) 이재영,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와 무역자유화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22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20, 242쪽.

8) 박언경/서철원, "전략물자수출관리법제 입법평가와 개선방안 - 대외무역법을 중심으로 -", 국제경제법연구 제16권 제1호,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8, 158쪽.

9) 최승환, "국제경제법 발전에 있어 국가안보의 역할과 과제", 국제법학회논총 제51권 제3호, 대한국제법학회, 2006, 30쪽.

조화를 주요 방향으로 삼았으며, 특히 2003년 개정에서 WMD 및 관련 기술의 수출 규제 조항이 추가되어 한국의 전략물자 통제 체계가 국제 사회의 요구를 반영해 발전했음을 보여준다.<sup>10)</sup> 2007년에는 기존에 전략물자 수출입공고에 의존하던 캐치올 통제를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명문화하여, 전략물자뿐만 아니라 비전략물자에 대한 캐치올 통제를 포함한 수출 통제 체계를 법적으로 한층 강화하였다.<sup>11)</sup>

2010년대에는 전략물자 관리와 방위산업 진흥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2013년 개정을 통해 수출 허가의 절차와 요건이 세분화되었고, 국제 비확산 체제 강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통제 대상이 확대되었다.<sup>12)</sup> 2016년 개정에서는 무기 수출 증가와 방위산업 진흥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법적 규제가 강화되었다.<sup>13)</sup> 이 시기의 개정은 단순히 통제의 강화뿐만 아니라, 방위산업을 국가 경제 발전의 주요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대외무역법」은 초기에는 단순히 무역을 관리하고 진흥하기 위한 법적 장치였으나, 국제 안보와 비확산 체제의 요구에 부응하여 전략물자 통제 및 무기 수출 규제를 포괄하는 법률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발전 과정은 국제 규범 준수와 국내 방위산업 진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시키려는 한국의 정책적 방향을 반영하고 있다.

한국의 무기 수출통제 제도는 방위산업의 발전, 안보적 필요성, 그리고 무기 수출 확대라는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정책적 목표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무기 수출 통제 절차는 여러 가지 구조적·법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방위사업청(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DAPA)이 중심이 되어 무기 수출 승인 절차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sup>14)</sup>에서 법적·제도적 한계를 명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 
- 10) 이지석, “전략물자 통제제도의 분석과 전망: 통제제도, 정보관리시스템, 기업인증제를 중심으로”, 관세학회지 제7권 제4호, 한국관세학회, 2006, 370쪽.
- 11) 박언경/정관선/왕상한, “수출통제제도 강화를 위한 대외무역법 개정 연구-한·미 수출통제법제 비교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72권,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405쪽.
- 12) 대외무역법 제19조(전략물자의 수출입 관리);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 수출입공고(2013년 개정);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 관련 시행 규정.
- 13) 대외무역법 제19조(전략물자의 수출입 관리), 제19조의2(수출 허가의 제한 등), 2016년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 수출입공고 (2016년 개정).
- 14) 방위사업법 제53조(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수출입 허가): 방위사업청장은 군용총포, 도검, 화약류 및 이에 준하는 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허가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방산물자 및 군용물자의 수출입 통제를 방위사업청장이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방위사업법 제57조(수출허가 등): 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에 관한 허가를 할 수 있으며, 허가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방위사업청이 수출 통제와 관련된 행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방위사업청은 한국 방위산업의 핵심 기관으로서 무기 개발, 조달, 수출 승인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특히 무기 수출 승인 절차는 여러 단계의 행정적 검토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신중한 심사를 기반으로 이뤄진다.<sup>15)</sup> 방위사업체는 수출하고자 하는 무기에 대한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청에 수출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때 방위사업청은 무기의 수출 대상국, 사용 목적, 그리고 해당 무기가 국제적 안보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승인 절차는 방위사업청이 국방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진행되며, 최종적으로는 수출이 허용되거나 거부된다. 이는 국가 간 무기 이전이 국가 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필연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가 모든 측면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첫째,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는 무기 수출 승인 절차에서는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라 무기 수출의 최종 승인은 행정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절차의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방위사업청은 무기 수출을 관리할 때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수출 무기의 민감성과 국가 안보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방위사업청 내부 기준과 판단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무기 수출 결정이 명확한 법적 기준이나 절차에 기반하지 않고,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방위사업청의 법적 책임을 불분명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둘째, 국회의 역할 부족 또한 방위사업청 중심의 승인 절차가 가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sup>16)</sup> 방위사업청의 무기 수출 승인 절차는 대부분 행정부 내부에서 이루어지며, 국회의 실질적 개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는 무기 수출이라는 민감한

15) 방위사업법 제53조(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수출입 허가): 방위사업청장은 군용총포, 도검, 화약류 및 이에 준하는 물품의 수출입에 대한 허가 권한을 가진다.

방위사업법 제57조(수출허가 등):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에 대한 허가는 방위사업청장이 담당하며,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수출허가 및 기술수출 통제목록): 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시행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할 권한을 가진다.

대외무역법 제19조(전략물자의 수출입 통제): 전략물자의 수출입 통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권한이나, 군사적 목적의 전략물자는 관련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별표3(군용물자 품목): 군용전략물자 및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 통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품목의 수출 여부를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6) 법률신문, “K-방산 수출에 대한 의회통제 강화입법 현황과 시사점”, 2024. 09. 10,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201260>>, 검색일: 2025. 3. 21.

문제를 국민적 논의나 합의 없이 행정부가 독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한다. 반면, 미국의 경우 무기 수출 승인은 의회의 강력한 감독과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국제적 비교는 한국의 무기 수출 관리 체계가 의회 차원의 견제와 국민적 합의를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수출 승인의 과정에서 방위사업청과 다른 정부 기관 간의 협력이 불완전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방위사업청은 국방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력하여 무기 수출 승인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이러한 협력 관계는 때때로 비효율적이다. 부처 간 정보 공유와 정책 조정이 원활하지 않으면, 수출 승인 과정이 지연되거나 부적절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방위사업체에게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방위사업청 중심의 무기 수출 승인 절차가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개선될 필요성을 보여준다.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부처 간 협력을 개선하는 것은 한국의 무기 수출 통제 제도를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더불어, 방위사업청의 행정적 자의성을 제한하고 승인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 한국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고,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동시에 국가 안보를 확실히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 Ⅲ. 주요국의 무기수출 통제 체계: 미국과 독일의 사례

미국은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 AECA)이라는 단일 법률을 통해 무기 수출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 법률은 국무부를 중심으로 국방부와 상무부 등 다양한 행정기관이 역할을 분담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특히, 미국 의회는 무기 수출에 대한 강력한 감독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행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부여한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정책적 일관성을 보장하는 한편, 무기 수출이 미국의 외교 정책과 인권 보호라는 국가적 목표에 부합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반면, 독일은 연방안보위원회(Bundessicherheitsrat)를 중심으로 무기 수출을 통제하고 있으며, 이는 총리를 의장으로 주요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행정부 내 기구로 운영된다. 연방안보위원회는 무기 수출과 관련하여 외교적, 안보적, 경제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무기 수출을 규율하는 단일 법률이 아닌 다양한 법령과 규범을 통해 운영된다. 이러한 체계는 독일이 자국의 외교 및 안보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무기 수출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미국과 독일의 무기 수출 통제 시스템은 체제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단일 법률과 강력한 의회 감독을 특징으로 하는 미국의 모델과 행정부 주도의 통합적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한 독일의 모델로 구분된다. 이러한 차이는 두 국가의 통제 방식이 국제 규범 준수와 국가 안보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떤 방식으로 반영하는지에 대한 비교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표 III-1〉 미국과 독일의 무기수출통제 시스템 비교

	미국(AECA & ITAR)	독일(KWKG & AWG)
법적 근거	무기수출통제법(AECA)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전쟁무기통제법(KWKG) 외국무역지급법(AWG)
주요 기관	의회 행정부(국무부, 국방부)	연방안보위원회(Bundessicherheitsrat) 연방경제기후보호부(BMWK)
의회의 역할	의회가 주요 무기 수출 거래를 15~30일 내에 승인 또는 거부할 권한 보유	연방안보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간접적 보고 및 제한적 감독 권한
투명성	의회의 강력한 감독을 통해 높은 투명성 유지	연방안보위원회의 비공개 운영으로 투명성 부족
국제 규범 준수	바세나르 체제,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MTCR) 등 국제 협정 준수	무기거래조약(ATT), EU 공통 입장 등 국제 협정 준수
주요 특징	대통령과 의회 간 견제와 균형 체계, 주요 무기 수출에 대한 다단계 검토	연방안보위원회 중심의 행정부 주도적 의사결정, 전쟁 무기와 기타 군사 장비의 명확한 분류

### 1. 미국: 무기수출통제법(ACEA)와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중심의 법적 체계와 의회의 개입

미국의 무기 수출 통제 시스템은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 AECA)과 국제무기거래규정(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ITAR)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sup>17)</sup> 의회의 강력한 개입과 감독을 통해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다.<sup>18)</sup>

17) Richard Weitz, *Arms Export Control Act and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Overview*, Strategic Studies Institute and U.S. Army War College Press, 2015, pp. 2-7.

18) CRS Report, *The U.S. Export Control System and the Export Control Reform Act of 2018*,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1, p. 2.

AECA는 1973년 욘키푸르 전쟁이라는 국제적 충돌과 그에 따른 정치적·경제적 여파를 배경으로 제정되었다.<sup>19)</sup>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아랍 국가 간의 무력 충돌로서,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규모 무기 지원을 제공함에 따라 중동 지역의 균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sup>20)</sup> 특히 이러한 군사적 개입은 단순한 무기 지원을 넘어, 중동에서의 미국의 전략적 위상을 변화시키고, 국제 정치 구조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맥락에서 욘키푸르 전쟁은 미국의 무기 수출 정책이 단지 군사적 목적에 국한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sup>21)</sup> 미국 정부의 즉각적인 군사적 지원 결정은 미국 행정부가 무기 수출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냈으며, 이는 국제적 논란을 야기하였다.<sup>22)</sup> 특히, 무기 수출이 국제 분쟁을 심화시킬 가능성과 함께, 의회와 국민의 동의 없이 특정 국가에 무기가 제공되는 과정에서 행정부의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sup>23)</sup> 이는 미국 의회가 무기 수출과 관련된 결정에 보다 강력하게 개입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욘키푸르 전쟁의 여파는 단지 외교적 차원에 그치지 않았으며, 중동 산유국들이 석유 금수 조치를 취함으로써 미국 및 서방 세계에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초래하였다.<sup>24)</sup> 이는 무기 수출 정책이 단순히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가 아니라 국제 경제 질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재확인시켰다. 따라서 무기 수출에 대한 통제는 국가의 전략적 이익과 국제적 책임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는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미국 의회는 1976년 AECA를 제정함으로써 무기 수출에

19) U.S. Naval Institute, “Lest We Forget: Nickel Grass: U.S. Resupplies Israel”, <<https://www.usni.org/magazines/proceedings/2018/january/lest-we-forget-nickel-grass-us-resupplies-israel>>, 검색일: 2025. 3. 21; Margaret M. Murphy, “All for Nothing?: Executive Authority and Congressional Evasion on Arms Sales”, *Catholic University Law Review Vol. 70 Iss. 1*, Columbus School of Law, 2021, pp. 161-162.

20) Office of the Historian, “Oil Embargo, 1973-1974”, <<https://history.state.gov/milestones/1969-1976/oil-embargo>>, 검색일: 2025. 3. 21.

21) See. John L. Scherer, “Soviet and American Behavior during the Yom Kippur War”, *World Affairs Vol. 141 no. 1*, Sage Publications, 1978.

22) Responsible Statecraft, “What if the US didn't help Israel in the Yom Kippur War? As it is now, everything the Middle East country does is underwritten by unconditional American aid and protection”, <<https://responsiblestatecraft.org/yom-kippur-war/>>, 검색일: 2025. 3. 21.

23) *Ibid.*

24) Daniel Haqem/D. N. Zulkifli, “The Opec Oil Price Shock Crisis (1973) and the Actions Taken by the United States: Factor That Contribute to the Oil Change”, *Asia Pacific Journal of Social Science Research Vol. 7 No. 1*, ABRN Asia, 2022, pp. 1-6.

대한 제도적 통제를 확립하고, 행정부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sup>25)</sup> AECA는 의회의 감독 하에 무기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무기 수출을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다.<sup>26)</sup> 특히, 무기 수출이 국제적 긴장을 완화하고 미국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러한 법 제정 과정은 무기 수출 정책이 국제 정치의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의회의 인식을 반영한 결과였다.

AECA는 욱키푸르 전쟁이라는 특정 역사적 사건과 그로 인한 국제적·경제적 환경 변화를 계기로 탄생하였으며, 이는 무기 수출이 단순한 군사적 지원을 넘어 국제적 책임과 외교적 전략이라는 복합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ECA는 대통령에게 특정 무기 수출을 승인하거나 금지할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의회가 주요 무기 수출 거래를 심의하고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sup>27)</sup> 의회는 특정 금액 이상의 무기 수출 거래에 대해 15일에서 30일 내에 이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행정부의 무기 수출 결정을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한다.<sup>28)</sup> 이러한 구조는 의회가 단순히 승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기 수출의 정치적, 군사적, 윤리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sup>29)</sup> 특히, 수출 대상국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가능성, 지역적 군사 균형의 변화, 인권 침해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무기 수출이 미국의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에 부합하도록 관리된다.

AECA의 시행 규정인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은 무기 및 관련 기술의 수출을 엄격히 규제하며, 민감한 군사 기술이 적대 세력이나 불법 단체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한다.<sup>30)</sup> ITAR은 무기 수출의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sup>31)</sup> 특히, ITAR은 미국의 다자간 수출 통제 체제와의 조화를 강조하며, 바세나르 체제(Wassenaar Arrangement)와 미사일 기술 통제

25) Kevin P. Sheehan, "Executive-Legislative Relations and the U.S. Arms Export Control Regime in the Post-Cold War Era", *Columbia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Vol. 33 No. 1*, Columbia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Assoc, 1995, pp. 192-195.

26) *Ibid.*

27) Arms Export Control Act, 22 U.S.C. § 2751 et seq.

28) Arms Export Control Act, 22 U.S.C. § 2776(b) (2024).

29) *Ibid.*

30)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22 C.F.R. §§ 120-130 (2024).

31) *Ibid.*

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등 국제 협정을 준수한다.<sup>32)</sup> 이러한 규정은 무기 수출이 국제 안보와 군사적 균형을 해치지 않도록 하고, 테러리스트 조직이나 적대 국가로 무기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방어 장치로 작동한다.

의회는 AECA와 ITAR의 적용 과정에서 행정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무기 수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요 무기 수출 거래에 대해 의회는 사전 검토를 통해 거래가 미국의 외교적, 군사적, 윤리적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의회는 무기 수출 결정이 인권 침해를 조장하거나, 군사적 불안정을 야기하며,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행정부를 견제한다. 이러한 의회의 개입은 무기 수출이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 미국의 외교적 가치와 전략적 목표를 반영하도록 보장한다.

## 2. 독일: 연방안보위원회와 법적·행정적 통제

독일의 무기수출통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패전국으로서의 지위와 그에 따른 국제적 제약에서 기인한다. 나치 독재와 전쟁 범죄의 책임으로 인해 독일은 군사적 활동에 강한 제한을 받았고, 이는 국제사회에서 재무장과 무기 수출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채택된 독일 기본법(Grundgesetz) 제26조는 평화적 국제 관계를 훼손하거나 전쟁을 준비하려는 행위를 위헌으로 규정하며, 전쟁 무기의 생산, 운송, 거래를 연방정부의 허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제26조 제1항은 독일 국가의 평화적 성격을 강조하며, 평화의 원칙을 헌법적 가치로 명시하고 있다.<sup>33)</sup> 이 원칙에 따라 이를 위협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처벌 가능한 범죄로 규정된다. 동조 제2항에서는 전쟁을 목적으로 하는 무기의 수출에 대한 독점적 허가권이 연방정부(federal cabinet), 즉 연방 내각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허가를 위한 구체적 절차는 연방법을 통해 규정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sup>34)</sup> 이 헌법적 요구는 일반적으로 전쟁무기통제법(Kriegswaffenkontrollgesetz,

32) *Ibid.*

33) Basic Law for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Grundgesetz] [GG], art. 26(1). 원문은 다음과 같다.  
“Acts tending to and undertaken with intent to disturb the peaceful relations between nations, especially to prepare for a war of aggression, shall be unconstitutional. They shall be made a criminal offense.”

34) Basic Law for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Grundgesetz] [GG], art. 26(2). 원문은 다음과 같다.  
“Weapons designed for warfare may be manufactured, transported or marketed only with the permission of the Federal Government. Details shall be regulated by a federal law.”

KWKG)을 통해 구현되는 것으로 이해된다.<sup>35)</sup>

KWKG는 평화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핵심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KWKG 제6조 제3항은 전쟁무기의 수출이 침략전쟁을 조장하거나 독일의 국제법적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출 허가를 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36)</sup> 이는 독일이 헌법적 가치와 국제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려는 의지를 반영하는 조항이다.

실무적으로 무기 수출 허가는 일반적으로 무기 제조업체가 사전 심사(preliminary inquiries)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시작된다.<sup>37)</sup> 수출 허가와 실제 무기 수출 간에는 몇 년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복잡성과 장기성을 고려하여 KWKG는 이미 부여된 허가를 철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sup>38)</sup> 예를 들어, 수입국의 안보 상황이 크게 악화된 경우, 기존의 허가를 철회함으로써 독일의 법적 및 윤리적 책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또한 전쟁무기 및 기타 군사장비 수출에 관한 정치적 원칙(The Political Principles for the Export of Weapons of War and Other Military Equipment)을 세우고 제3국에 대한 무기 수출을 제한적으로 다룰 것을 규정하고 있다.<sup>39)</sup> 이 원칙에 따르면, 제3국으로의 전쟁무기 수출 허가는 “연방공화국의 특정 외교적 또는 안보정책적 이익이 특별히 고려되어 예외적으로 정당화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과정에서 동맹국의 이익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sup>40)</sup>

독일의 무기 수출 정책은 국제적인 합의, 규범, 그리고 규정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체계에 따라 운영된다. 이 체계에는 1949년 제네바 협약(1949 Geneva Convention)과 같은 국제인도법 조항,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

35) See. Marlitt Brandes, “Germany’s Secret Arms Deal: Compliance of German Arms Export Licensing with International Law”, *German Y.B. Int’l L. Vol. 56*, Duncker & Humblot, 2013.

36) Kriegswaffenkontrollgesetz [KWKG] [War Weapons Control Act], § 6(3) (Ger.).

37) Deutscher Bundestag, “Kurzinformation: The Role of the German Bundestag in Approving Arms Exports”, <[https://www.bundestag.de/resource/blob/938170/12bc979cb7133464ad633f20565578ff/WD-2-016-23\\_EN-pdf.pdf](https://www.bundestag.de/resource/blob/938170/12bc979cb7133464ad633f20565578ff/WD-2-016-23_EN-pdf.pdf)>, 검색일: 2025. 3. 21.

38) Kriegswaffenkontrollgesetz [KWKG] [War Weapons Control Act], § 7 (Ger.).

39) 1971년에 처음 도입된 전쟁무기 및 기타 군사장비 수출에 관한 정치적 원칙은 원칙적으로 전쟁무기를 NATO 비회원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이 원칙은 세 차례 개정되었으며,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19년 7월에 이루어졌다. 이 개정을 통해 제3국으로의 전쟁무기 수출에 대한 일반적 금지는 복잡한 제한 규범 체계로 대체되었다. John N.T. Helferich, *Arms Export Controls Under Siege of Globalization*, Tectum, 2020, pp. 38-39.

40)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Energy], Political Principles for the Export of Weapons of War and Other Military Equipment, art. 2(6) (2019).

의 원칙, 그리고 유엔이나 지역 기구에서 부과하는 무기 금수조치가 포함된다.<sup>41)</sup> 예를 들어 1997년 대인지뢰금지협약(1997 Anti-Personnel Mine Ban Convention),<sup>42)</sup> 2001년 유엔 소형무기 및 경량무기 불법거래 방지 행동계획(2001 UN Programme of Action to Prevent, Combat and Eradicate the Illicit Trade in Small Arms and Light Weapons in All Its Aspects, UNPoA),<sup>43)</sup> 2014년 무기거래조약(2014 Arms Trade Treaty, ATT)<sup>44)</sup> 등을 가입 하였고, 이를 통해 국제 규범과의 조화를 도모하였다.<sup>45)</sup>

국내적으로는 독일이 무기전쟁통제법(KWKG), 외국무역지급법(Foreign Trade and Payments Act, AWG), 외국무역지급명령(Foreign Trade and Payments Ordinance, AWW), 그리고 개정된 무기수출 정치적 원칙을 통해 이러한 규정을 이행하고 있다.<sup>46)</sup> 특히, 독일은 연방정부의 무기 수출 보고서를 통해 수출 통제 체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법적·정책적 체계는 독일이 국제적 책임을 다하며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무기 수출을 경제 정책의 도구로 간주할 수 없으며, 일반적인 수출과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sup>47)</sup> 수출 허가는 각 사안을 개별적으로 면밀히 검토

41) Paul Saupe, “German Political Decisions on Armament and Arms Exports Examined Under the Concept of the Military-Industrial Complex”, *Inst. for Int'l Pol. Econ. Berlin No. 177/2022*, HWR Berlin, 2022, p.23.

42) ICRC, “The Ottawa Treaty Explained”, <[https://www.icrc.org/sites/default/files/external/doc/en/assets/files/other/icrc\\_002\\_0702\\_ottawa\\_explained.pdf](https://www.icrc.org/sites/default/files/external/doc/en/assets/files/other/icrc_002_0702_ottawa_explained.pdf)>, 검색일: 2025. 3. 21.

43)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Seventh Annual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uncil Joint Action of 12 July 2002 on the European Union's contribution to combating the destabilising accumulation and spread of small arms and light weapons (2002/589/CFSP) 2010/C 14/01”,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3A52010XG0120%2801%29>>, 검색일: 2025. 3. 21.

44) European Parliament,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5 February 2014 on the ratification of the Arms Trade Treaty (ATT) (2014/2534(RSP))”, <[https://www.europarl.europa.eu/doceo/document/TA-7-2014-0081\\_EN.html](https://www.europarl.europa.eu/doceo/document/TA-7-2014-0081_EN.html)>, 검색일: 2025. 3. 21.

45)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반영되어, 1998년 EU 무기수출 행동강령이 2008년 군사기술 및 장비 수출 통제에 관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공통 입장(Common Position)으로 발전하였다.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Council Common Position 2008/944/CFSP of 8 December 2008 Defining Common Rules Governing Control of Exports of Military Technology and Equipment*, 2008 O.J. (L 335) 99.

46) Federal Republic of Germany, “Military Equipment Export Report 2003”, <[https://www.sipri.org/sites/default/files/research/armaments/transfers/transparency/national\\_reports/germany/Germany\\_03\\_english.pdf](https://www.sipri.org/sites/default/files/research/armaments/transfers/transparency/national_reports/germany/Germany_03_english.pdf)>, 검색일: 2025. 3. 21.

47)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Climate Action (BMWK), “Export Controls for Military Equipment”, <<https://www.bmwk.de/Redaktion/EN/Dossier/export-controls-for-military-equipment.html>>, 검색일: 2025. 3. 21.

한 후 외교 및 안보 정책상의 고려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sup>48)</sup> 독일의 무기 수출은 두 가지로 명확히 구분되며, 각각의 범주에 따라 의사결정 체계와 책임 기관도 다르게 설정된다. 첫 번째 범주인 전쟁 무기(Weapons of War)는 전투에서 직접 사용되는 무기와 군사 시스템으로, 주로 탱크, 전투기, 군함, 미사일과 같은 주요 군사 장비가 포함된다.<sup>49)</sup> 이러한 무기의 수출은 독일 외교 및 안보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결정 과정이 상대적으로 더 엄격하고 여러 단계를 거친 평가 절차를 따른다. 경제부(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Climate Action)는 외교부의 지역 담당 부서와 국방부로부터 수출 대상 국가의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 상황에 대한 평가를 받아 최종 결정을 내린다.<sup>50)</sup> 이 과정에서 수출 허가가 국제법 및 독일의 무기 수출 원칙을 준수하는지 면밀히 검토된다.<sup>51)</sup>

두 번째 범주인 기타 군사 장비(Other Military Equipment)는 전쟁 무기 이외의 군사적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장비를 포함한다.<sup>52)</sup> 예를 들어, 군용 차량, 통신 장비, 보호 장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장비는 전쟁 무기보다 직접적인 군사적 위험이 낮다고 간주 되지만, 여전히 민감한 수출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기타 군사 장비의 수출 결정 과정에 연방수출통제청(BAFA, Federal Office for Export Control)은 군사 장비 수출 결정 시 국제 규범과 국가 정책 준수를 위한 전문적 검토와 자문을 제공한다.<sup>53)</sup> BAFA는 군사적 사용 가능성 외에도 이중 용도(Dual Use) 기술 여부를 고려하

48) Federal Government of Germany, “Political Principles Adopted by the Government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for the Export of War Weapons and Other Military Equipment”, <<https://www.wassenaar.org/app/uploads/2015/07/gerprinarms.pdf>>, 검색일: 2025. 3. 21.

49) Kriegswaffenkontrollgesetz 제1조는 전쟁 무기의 정의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독일 연방정부의 전쟁 무기 통제에 대한 법적 기반을 설정한다. 제1조는 전쟁 무기를 군사적 목적으로 설계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무기로 정의하며, 탱크, 전투기, 군함, 미사일, 대포, 화학무기 등이 포함된다고 명시한다. 또한, 세부 항목은 전쟁 무기 목록(Liste der Kriegswaffen)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독일 내 전쟁 무기의 제조, 보유, 이전, 수출, 수입 등 모든 활동에 적용되며, 국제 규범(바세나르 협정 및 무기거래조약(ATT) 등)과의 부합성을 요구한다. 법의 목적은 전쟁 무기의 무분별한 제조와 유통을 방지하고 국가 안보 및 국제 평화를 보호하는 데 있다. 법 집행과 감독 책임은 연방경제기후 보호부(BMWK)와 연방수출통제청(BAFA)에 있다. 세계법제정보센터, “전쟁무기통제법(Gesetz über die Kontrolle von Kriegswaffen)”, <[https://world.moleg.go.kr/web/wli/lgsInfoReadPage.do?CTS\\_SEQ=12929&AST\\_SEQ=69](https://world.moleg.go.kr/web/wli/lgsInfoReadPage.do?CTS_SEQ=12929&AST_SEQ=69)>, 검색일: 2025. 3. 21.

50)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Climate Action (BMWK), “Export Controls for Military Equipment”, <<https://www.bmwk.de/Redaktion/EN/Dossier/export-controls-for-military-equipment.html>>, 검색일: 2025. 3. 21.

51) *Ibid.*

52) War Weapons Control Act, *op. cit.*

여 수출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sup>54)</sup>

이처럼 독일은 전쟁 무기와 기타 군사 장비를 구분함으로써 수출 허가 과정에서의 체계적 관리와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러한 구분은 무기 수출로 인한 안보적, 외교적 영향을 최소화하며, 독일의 국제적 신뢰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독일의 무기 수출 정책은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특히 논란이 되거나 민감한 수출 결정은 연방안보위원회(Bundesicherheitsrat)<sup>55)</sup>에서 이루어진다. 본 위원회는 총리를 비롯하여 외교부, 국방부, 경제부 장관 등 주요 내각 인사로 구성되며,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출 결정을 심의한다.<sup>56)</sup> 위원회는 독일의 외교적 약속과 국제적 신뢰를 유지하는 동시에, 무기 수출로 인해 국제적 분쟁에 연루되지 않도록 검토한다.<sup>57)</sup> 그러나 비밀리에 운영되는 연방안보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은 구체적인 논의 내용이나 결정의 세부 사항이 공개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투명성 부족에 대한 비판이 있다.<sup>58)</sup> 2024년 베를린 행정법원(Berlin Administrative Court)에서 연방안보위원회의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 허가와 관

53) Federal Ministry of Justice, “Außenwirtschaftsgesetz [AWG] [Foreign Trade and Payments Act], § 4, translation at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Federal Ministry of Justice]”, <[https://www.gesetze-im-internet.de/englisch\\_awg/](https://www.gesetze-im-internet.de/englisch_awg/)>, 검색일: 2025. 3. 21.

54) 민간과 군사적 용도로 동시에 활용 가능한 기술은 민간 목적으로 개발되었더라도, 군사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를 받는다. Council Regulation (EU) 2021/821, 20 May 2021, Establishing a Community Regime for the Control of Exports, Brokering, Technical Assistance, Transit and Transfer of Dual-Use Items (Recast), arts. 2, 3, 4, 2021 O.J. (L 206) 1.

55) 연방안보위원회는 독일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기구로, 특히 무기 수출과 같은 국가 안보 및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비공개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무기 수출은 경제적, 외교적, 안보적 요소가 얽혀 있는 사안으로, 독일의 기본법(Grundgesetz) 제26조 및 무기통제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히 규제된다. 이에 따라 연방안보위원회는 각 부처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 차원의 통일된 입장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필요성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해당 위원회는 총리와 외무장관, 국방장관, 경제장관 등을 포함한 고위급 정부 관계자들로 구성되며, 주요한 무기 수출 승인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연방안보위원회는 국제법, 인권 문제, 분쟁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일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고 국가의 안보 이익을 보호한다. 특히, 논란이 예상되는 사안을 비공개로 논의함으로써 외부 압력 없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독일 외교 및 안보 정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연방안보위원회의 이러한 구조와 기능은 독일이 전후 국제 사회에서 평화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무기 수출을 통한 경제적 이익과 국제적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제도적 기초를 제공한다.

56) Simone Wisotzki, *German Arms Exports to the World?: Taking Stock of the Past 30 Years*, Peace Research INST, 2020, p. 5.

57) *Ibid.*

58) *Ibid.*

련된 소송이 제기되었다.<sup>59)</sup> 이는 연방안보위원회의 비밀스러운 의사결정 과정과 관련된 투명성 문제를 보여주는 실례로써, 베를린 행정법원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주민들이 독일 정부의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 허가를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기각하였다. 본 소송은 유럽법률지원센터(European Legal Support Center), Law for Palestine, 그리고 Palestine Institute for Public Diplomacy 등 여러 단체의 지원을 받아 제기되었다. 원고들은 독일이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함으로써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가담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이 이스라엘로의 무기 수출이 국제인도법을 위반한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원은 독일 정부가 무기 수출 허가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보유하며, 필요 시 추가 조건을 부과하거나 수출국으로부터 무기의 사용 제한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독일의 무기수출통제의 권한이 행정부 중심인데 반해 독일 연방의회는 무기 수출 정책에 일정 부분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그 역할은 본질적으로 제한적이다.<sup>60)</sup> 연방의회의 경제위원회는 연방안보위원회(Bundessicherheitsrat)의 결정 결과에 대해 사후적으로 보고를 받으며,<sup>61)</sup> 이는 의회가 무기 수출 정책을 간접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 작용한다. 또한, 의회는 질의 시간(Fragestunde) 및 공식적인 조사 요청(Kleine Anfrage)을 통해 연방정부의 무기 수출 정책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절차적 권한을 가진다.<sup>62)</sup>

그러나 이러한 감독 수단은 연방안보위원회의 비공개 운영으로 인해 실질적인 정보 접근에 한계를 가지며, 이는 의회의 감독 기능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평가된다. 특히, 연방안보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은 비공개로 이루어지며, 논의의 세부사항과 정책적 고려사항은 의회에 충분히 공유되지 않는다. 이러한 제약은 독일 의회의 무기 수출 정책에 대한 감독권이 정보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의 문제로 인해 실질적으로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sup>63)</sup>

59) REUTERS, “German Court Dismisses Request to Block Arms Exports to Israel”, June 11, 2024,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german-court-dismisses-request-block-arms-exports-israel-2024-06-11/>>, 검색일: 2025. 3. 21.

60) German Bundestag, *op. cit.*

61) *Ibid.*

62) Basic Law for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Grundgesetz), Art. 20; Rules of Procedure of the German Bundestag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 100-104.

63) 독일의 녹색당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연방의회가 무기 수출 통제에서

독일의 연방의회는 연방안보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간접적 보고 및 제한된 정보 접근 수단을 통해 감독권을 행사하지만, 연방안보위원회의 비공개 운영은 의회의 실질적 감독 기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IV. 한국 무기수출통제 체계의 개선 방향: 독립규제위원회 설립의 필요성과 방향

한국의 무기 수출 통제 체계는 현재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 시스템은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무기 수출 승인 과정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가 미흡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조정 과정도 구조적으로 제한적이다. 이러한 한계는 국내외적으로 무기 수출 정책의 신뢰성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국가 안보와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동시에 저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독일의 무기 수출 통제 시스템의 장점을 참고하여, 한국형 위원회 시스템을 새롭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 시스템은 다부처 간 협력과 독립적 의사결정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한다. 한국은 이미 국가안전보장회의나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주요 위원회를 통해 정책적 조정과 통제를 효과적으로 실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의 최상위 결정 기구로, 여러 부처 간 조정을 통해 일관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강력한 구조적 모델을 제공한다.<sup>64)</sup>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제 정책의 공정성을

---

약한 위치에 있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연방정부와 의회의 관계 및 정보 제공의 제한성에 대한 논의는 의회의 역할이 제한적임을 시사한다. 판결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유럽연합(EU) 관련 사안에 대해 연방의회에 정보를 포괄적이고 가능한 한 조기에 제공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이러한 정보 제공의 제한은 무기 수출 및 EU의 공통 외교·안보 정책(CFSP)과 같은 주요 사안에서 의회의 참여 권한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위기 관리 개념과 터키 총리의 서한은 일부 의회 위원회에만 제한적으로 제공되었고, 이는 모든 의회 구성원이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들어 의회의 감독 기능을 약화시켰다. 또한, 연방안보위원회의 비공개 운영과 헌법 제23조(제2항)의 제한적 해석은 의회가 무기 수출과 같은 정책 결정에 충분히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정보 제한은 의회 내 공개 토론 및 민주적 논의를 제한하며, 의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수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따라서, 연방헌법재판소는 판결을 통해 연방정부의 정보 제공 제한이 의회의 감독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암시적으로 보여주었다. Judgment of the Second Senate of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BVerfG, Press Release No. 83/2022 (Dec. 6, 2022).

유지하며,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sup>65)</sup> 이처럼 한국의 기존 위원회 시스템은 무기 수출 통제 체계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미국의 경우 무기수출통제법(AECA)과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을 기반으로 무기 수출 통제 체계를 운영하며, 의회의 강력한 감독과 행정부 간 견제 구조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의회가 주요 무기 수출 거래를 검토하고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구조는 무기 수출 결정 과정에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데 기여한다. 독일은 연방안보위원회(Bundessicherheitsrat)를 중심으로 무기 수출 정책을 결정하며, 외교부, 국방부, 경제부 간 협력을 통해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검토 과정을 거친다. 독일의 연방안보위원회는 무기 수출 결정 과정에서 국제법 준수와 국가 안보, 외교적 고려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비공개 운영을 통해 외부 압력 없이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독일의 시스템은 비공개 운영으로 인한 투명성 부족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러한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은 무기 수출 통제를 전담할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위원회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다부처 협력을 기반으로 한 독립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지녀야 한다. 이 위원회는 방위사업청,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등의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통합적인 구조를 갖추고, 무기 수출 정책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무기 수출 승인 과정에서 국제 규범 준수 여부와 수출 대상국의 안보 상황, 인권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무기수출통제를 담당하는 독립규제위원회는 수출 대상 무기의 군사적 민감성, 최종 사용자, 그리고 국제법과의 부합성을 평가하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다자간 수출 통제 체제, 예를 들어 바세나르 체제(Wassenaar Arrangement)와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MTCR)의 규범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무기 수출로 인한 국가 안보 및 외교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 허가 과정에서 다단계 심사를 도입하고, 결과를 정기적으로 의회와 국민에게 보고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비공개로 운영하되, 결과에 대한 보고서 형태의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채택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독일 연방안보위원회의

64) 배정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조직과 운영”, 국방연구 제47권 제1호,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06, 177-180쪽.

6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

장점을 참고하면서도 투명성 부족이라는 비판을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또한, 무기 수출 통제와 관련하여 국회가 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의 사후 감시 및 평가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의회는 미국의 경우처럼 직접적인 승인 권한을 가지기보다는 독일처럼 보고를 통해 정책적 방향성을 검토할 수 있는 구조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V. 결론

한국의 무기 수출 통제 체계는 방위사업청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일정한 행정적 효율성을 유지해 왔으나, 국제 규범 준수, 투명성, 다자간 협력이라는 핵심 요소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무기 수출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국가 안보와 국제 외교 정책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는 만큼, 이를 통제하는 시스템은 민주적 통제, 다부처 협력, 국제 규범 준수라는 원칙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현행 체제는 행정부 내부에서 폐쇄적으로 운영되며, 의회의 감독 기능이 미약하고,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은 독립적인 무기수출통제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독립위원회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의회 보고 의무를 강화하고, 정책 결정을 다부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며, 국제 규범을 엄격히 준수하는 구조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미국은 의회의 강력한 감독과 행정부 간 견제 구조를 통해 무기 수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독일은 연방안보위원회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정책적 평가 과정을 거치지만 비공개 운영으로 인해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가진다. 한국은 이 두 모델의 장점을 결합하여, 독일처럼 전문가 중심의 행정적 판단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미국과 같이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절차적 개선을 도입해야 한다.

독립위원회의 핵심 역할은 다부처 협력을 통한 통합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다. 현재 방위사업청 중심 체계에서는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등 다양한 부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며, 이는 무기 수출 결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독립위원회는 각 부처의 대표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 기구로서 운영되며, 무기 수출이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위한 산업 활동이 아니라, 국가 안보, 외교, 국제법, 산업 정책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임을 반영하는 구조로 운영되어야 한다. 특히, 무기 수출 승인 과정에서 국제 규범 준수 여부와 수출 대상국의 안보 상황, 인권 문제 등을 철저히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한국은 바세나르 체제(Wassenaar Arrangement),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MTCR), 무기거래조약(ATT) 등 다자간 수출 통제 체제에 가입한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해 무기 수출 통제 체제를 국제 기준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 방위사업청 중심의 체계는 국제적 투명성 요구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며, 한국이 주요 선진국 수준의 무기 수출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신뢰를 제공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독립위원회는 국제 규범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무기 수출 통제의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이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서 ‘책임 있는 무기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며, 특히 한국의 무기 수출이 국제사회의 인권 및 안보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확신을 제공함으로써 방산 수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방위산업의 성장은 한국의 경제적, 전략적 이익을 고려할 때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무분별한 무기 수출은 국가 안보와 외교적 부담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엄격한 수출 통제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방산 기업들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독립위원회는 무기 수출 절차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행정적 지연을 방지하면서도, 장기적으로 방산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단기적인 방산 수출 증가보다, 중장기적으로 한국이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신뢰를 확보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한국의 무기 수출 통제 체계는 방위산업의 성장과 국가 안보, 국제 규범 준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독립적인 조정 기구를 필요로 한다. 현행 방위사업청 중심 체계는 행정적 효율성을 제공하지만, 투명성 부족, 다부처 협력 미흡, 의회의 감독 부재, 국제 기준 미흡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독립적인 무기수출통제위원회를 설립하여, 다부처 협력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한국은 책임 있는 무기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고, 방위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가 안보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John N.T. Helferich, *Arms Export Controls Under Siege of Globalization*, Tectum, 2020.
- Richard Weitz, *Arms Export Control Act and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Overview*, Strategic Studies Institute and U.S. Army War College Press, 2015.
- Simone Wisotzki, *German Arms Exports to the World?: Taking Stock of the Past 30 Years*, Peace Research INST, 2020.

### 2. 학술지

- 김현지/김대원/최승환, “한국의 통합 수출통제법령 제정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통상학회 제13권 제2호, 국제통상연구, 2007, 153-175쪽.
- 박언경/서철원, “전략물자수출관리법제 입법평가와 개선방안 -대외무역법을 중심으로-”, 국제경제법연구 제16권 제1호,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8, 157-187쪽.
- 박언경/정관선/왕상한, “수출통제제도 강화를 위한 대외무역법 개정 연구 -한·미 수출통제법제 비교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72권,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395-426쪽.
- 배정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조직과 운영”, 국방연구 제47권 제1호,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04, 169-189쪽.
- 이재영,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와 무역자유화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22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20, 239-258쪽.
- 이지석, “전략물자 통제제도의 분석과 전망: 통제제도, 정보관리시스템, 기업인증제를 중심으로”, 관세학회지 제7권 제4호, 한국관세학회, 2006, 365-386쪽.
- 최승환, “국제경제법 발전에 있어 국가안보의 역할과 과제”, 국제법학회논총 제51권 제3호, 대한국제법학회, 2006, 11-44쪽.
- Daniel Haqem/D. N. Zulkifli, “The Opec Oil Price Shock Crisis (1973) and the Actions Taken by the United States: Factor That Contribute to the Oil Change”, *Asia Pacific Journal of Social Science Research*, Vol. 7 No. 1, ABRN Asia, 2022, pp. 1-15.
- Gerold Yonas, “The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Daedalus* Vol. 114 No. 2, The MIT Press, 1985, pp. 73-90.

- John L. Scherer, “Soviet and American Behavior during the Yom Kippur War”, *World Affairs Vol. 141 no. 1*, Sage Publications, 1978, pp. 3-23.
- Kevin P. Sheehan, “Executive-Legislative Relations and the U.S. Arms Export Control Regime in the Post-Cold War Era”, *Columbia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Vol. 33 No. 1*, Columbia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Assoc, 1995, pp. 179-215.
- Margaret M. Murphy, “All for Nothing?: Executive Authority and Congressional Evasion on Arms Sales”, *Catholic University Law Review Vol. 70 Iss. 1*, Columbus School of Law, 2021, pp. 149-176.
- Paul Saupe, “German Political Decisions on Armament and Arms Exports Examined Under the Concept of the Military-Industrial Complex”, *Inst. for Int'l Pol. Econ. Berlin No. 177/2022*, HWR Berlin, 2022.

### 3. 신문기사

- 법률신문, “K-방산 수출에 대한 의회통제 강화입법 현황과 시사점”, 2024. 09. 10,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201260>>, 검색일: 2025. 3. 21.

### 4. 웹자료

- 국사편찬위원회, “법령 제39호, ‘대외무역규제’가 공포”, 1946. 1. 3, <[https://db.history.go.kr/id/dh\\_001\\_1946\\_01\\_03\\_0080](https://db.history.go.kr/id/dh_001_1946_01_03_0080)>, 검색일: 2024. 12. 16.
- \_\_\_\_\_, “제헌헌법-경제개혁”, <[https://db.history.go.kr/item/cons/levelOnlyBiblio.do?levelId=cons\\_001\\_0050\\_0060\\_0020\\_0010](https://db.history.go.kr/item/cons/levelOnlyBiblio.do?levelId=cons_001_0050_0060_0020_0010)>, 검색일: 2024. 12. 16.
- 세계법제정보센터, “전쟁무기통제법(Gesetz über die Kontrolle von Kriegswaffen)”, <[https://world.moleg.go.kr/web/wli/lgsInfoReadPage.do?CTS\\_SEQ=12929&AST\\_SEQ=69](https://world.moleg.go.kr/web/wli/lgsInfoReadPage.do?CTS_SEQ=12929&AST_SEQ=69)>, 검색일: 2025. 3. 21.
- Deutscher Bundestag, “Kurzinformation: The Role of the German Bundestag in Approving Arms Exports”, <[https://www.bundestag.de/resource/blob/938170/12bc979cb7133464ad633f20565578ff/WD-2-016-23\\_EN-pdf.pdf](https://www.bundestag.de/resource/blob/938170/12bc979cb7133464ad633f20565578ff/WD-2-016-23_EN-pdf.pdf)>, 검색일: 2025. 3. 21.
- European Parliament,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5 February 2014 on the ratification of the Arms Trade Treaty (ATT) (2014/2534(RSP))”, <[https://www.europarl.europa.eu/doceo/document/TA-7-2014-0081\\_EN.html](https://www.europarl.europa.eu/doceo/document/TA-7-2014-0081_EN.html)>, 검색일: 2025. 3. 21.

- Federal Government of Germany, “Political Principles Adopted by the Government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for the Export of War Weapons and Other Military Equipment”, <<https://www.wassenaar.org/app/uploads/2015/07/gerprinarms.pdf>>, 검색일: 2025. 3. 21.
-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Climate Action (BMWK), “Export Controls for Military Equipment”, <<https://www.bmwk.de/Redaktion/EN/Dossier/export-controls-for-military-equipment.html>>, 검색일: 2025. 3. 21.
- Federal Ministry of Justice, “Außenwirtschaftsgesetz [AWG] [Foreign Trade and Payments Act], § 4, translation at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Federal Ministry of Justice]”, <[https://www.gesetze-im-internet.de/englisch\\_awg/](https://www.gesetze-im-internet.de/englisch_awg/)>, 검색일: 2025. 3. 21.
- Federal Republic of Germany, “Military Equipment Export Report 2003”, <[https://www.sipri.org/sites/default/files/research/armaments/transfers/transparency/national\\_reports/germany/Germany\\_03\\_english.pdf](https://www.sipri.org/sites/default/files/research/armaments/transfers/transparency/national_reports/germany/Germany_03_english.pdf)>, 검색일: 2025. 3. 21.
- ICRC, “The Ottawa Treaty Explained”, <[https://www.icrc.org/sites/default/files/external/doc/en/assets/files/other/icrc\\_002\\_0702\\_ottawa\\_explained.pdf](https://www.icrc.org/sites/default/files/external/doc/en/assets/files/other/icrc_002_0702_ottawa_explained.pdf)>, 검색일: 2025. 3. 21.
-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Seventh Annual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uncil Joint Action of 12 July 2002 on the European Union's contribution to combating the destabilising accumulation and spread of small arms and light weapons (2002/589/CFSP) 2010/C 14/01”,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3A52010XG0120%2801%29>>, 검색일: 2025. 3. 21.
- Responsible Statecraft, “What if the US didn't help Israel in the Yom Kippur War? As it is now, everything the Middle East country does is underwritten by unconditional American aid and protection”, <<https://responsiblestatecraft.org/yom-kippur-war/>>, 검색일: 2025. 3. 21.
- REUTERS, “German Court Dismisses Request to Block Arms Exports to Israel”, June 12, 2024,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german-court-dismisses-request-block-arms-exports-israel-2024-06-11/>>, 검색일: 2025. 3. 21.
- U.S. Naval Institute, “Lest We Forget: Nickel Grass: U.S. Resupplies Israel”, <<https://www.usni.org/magazines/proceedings/2018/january/lest-we-forget-nickel-grass-us-resupplies-israel>>, 검색일: 2025. 3. 21.

## 5. 미국법령

Arms Export Control Act, 22 U.S.C. § 2751 et seq.

Arms Export Control Act, 22 U.S.C. § 2776(b) (2024).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22 C.F.R. §§ 120-130 (2024).

## 6. 독일법령

Basic Law for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Grundgesetz] [GG], art. 20.

Basic Law for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Grundgesetz] [GG], art. 26(1).

Basic Law for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Grundgesetz] [GG], art. 26(2).

Kriegswaffenkontrollgesetz [KWKG] [War Weapons Control Act], § 6(3).

Kriegswaffenkontrollgesetz [KWKG] [War Weapons Control Act], § 7.

Rules of Procedure of the German Bundestag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 100-104.

## 7. 기타자료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Energy], Political Principles for the Export of Weapons of War and Other Military Equipment, art. 2(6), 2019.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Council Common Position 2008/944/CFSP of 8 December 2008 Defining Common Rules Governing Control of Exports of Military Technology and Equipment, 2008 O.J. (L 335) 99.

Council Regulation (EU) 2021/821, 20 May 2021, Establishing a Community Regime for the Control of Exports, Brokering, Technical Assistance, Transit and Transfer of Dual-Use Items (Recast), arts. 2, 3, 4, 2021 O.J. (L 206) 1.

CRS Report, The U.S. Export Control System and the Export Control Reform Act of 2018,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1.

Judgment of the Second Senate of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BVerfG, Press Release No. 83/2022 (Dec. 6, 2022).

[ Abstract ]

## **Improving South Korea's Arms Export Control System**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Establishing an Independent Regulatory Commission—

Jo, Jang Hyun\*

This study analyzes the limitations of South Korea's arms export control system and proposes improvement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Arms Export Control Commission by comparing the cases of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South Korea's current system, which is primarily managed by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DAPA), maintains a certain level of administrative efficiency. However, it faces significant challenges, including a lack of parliamentary oversight, insufficient transparency, limited inter-agency cooperation, and inadequate alignment with international norms.

In the United States, Congress exercises strong oversight, ensuring democratic control and policy consistency through the Arms Export Control Act (AECA) and the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ITAR). Meanwhile, Germany operates a multi-agency cooperation system centered on the Federal Security Council (Bundessicherheitsrat), but its non-transparent decision-making process is often criticized.

This study argues that South Korea should adopt an independent regulatory body that integrates the transparent oversight mechanisms of the U.S. with Germany's inter-agency cooperation model. The proposed commission would involve multiple agencies—including DAPA,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d the Ministry of Justice—to ensure fairness and objectivity in the arms export approval process. Additionally, it would be responsible for ensuring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norms, such as the Wassenaar Arrangement (WA), the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 and the Arms Trade Treaty (ATT).

---

\* Attorney at Law(District of Columbia, U.S.A.), Ph.D Candidate, School of Law, Handong Global University

To achieve these goals, the study suggests introducing a multi-stage review process and a parliamentary reporting system to enhance transparency while balancing national security interests with international responsibilities.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Arms Export Control Commission would not only enhance South Korea's global credibility and defense industry competitiveness but also solidify its position as a responsible arms-exporting nation committed to international security and legal standards.

[Key Words] The Arms Export regime of South Korea, Foreign Trade Act, Defense Acquisition Act, Arms Export Control Act, Bundessicherheitsrat